

송유관설치공사계획 [] 신고
[] 변경신고 필증

상호(명칭)

성명(대표자)

생년월일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공사명

공사기간

공사기점·종점

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송유관설치공사계획 []신고 []변경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